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1. 선발규모

구 분	선 발 인 원(명)					비 고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합 계	43	2	2	12	27	*지급 기준액(1인) - 초·중·고등학생 80만원 - 대학생 230만원
성적우수	15				15	
희 망 (저득주민자녀)	20			10	10	
특 기	8	2	2	2	2	

* 장학생 선발인원은 하반기 장학금 총 예산액 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사항 및 지원기준

-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달서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신청은 1세대 1명(2021년 기준)
- 장학금 지급기준금액은 초·중·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230만원/1인
-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기준금액에서 당해 2학기 타 장학금(학비감면 포함) 수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희망 장학금
 - 고등학생: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상관없이 지급기준금액 80만원 지급
 - 대학생 당해 2학기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차감하고 최대 230만원/1인 지급
- 특기장학금(생활비지원): 초·중·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230만원/1인

(제외자)

- 성적우수 장학금: 당해 2학기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200만원 이상의 수혜를 받은 자
 - ※ 부모 직장에서의 장학금 또는 학비지원도 해당
 - ※ 단, 특기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 및 학비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2021년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
- 2021년도 휴학생 또는 2학기 복학생
-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
 - ※ 전문대학: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 일반대학: 최대 8학기(4년제),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제외
- 2021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대상별 사항 및 제출서류
 - 성적우수 분야

구 분	신 청 자 격	추천권자
성적기준	○ 대 학 생: 2021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p(pass)" 선택과목 미포함)로서 100점 만점의 평균 90점 이상	학(총)장
제출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1호서식 ② 202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에 평균성적 백분율 표기 ③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달서구거주자) ※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는 신청자기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추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⑤ 품행 및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⑥ 2021년 2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 ⑦ 대학생: 소득분위 확인서(8분위 이내)	

○ 희망(저소득주민자녀) 분야

구 분	신 청 자 격	추천권자
소득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이내 ※ 2021년 4인가구원 기준중 위소득(4,876,290원) 이내/(행복e음 전산조회)	거주지 동 장
재산기준	○ 재산총액이 2억원 이하(행복e음 조회)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기준 (전·월세보증금 포함)	
성적기준	(고등학생) ○ 2021년 1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 ※ 성적평가 시 이수 또는 우수 등으로 평가된 과목 제외 (대학생) ○ 2021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p(pass)" 선택과목 미포함)로서 100점 만점의 평균 70점 이상	
제출서류	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202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생: 성적증명서에 평균성적 백분을 표기 ③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달서구거주자) ※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는 신청자기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추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⑤ 품행 및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⑥ 2021년 2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 ⑦ 가정실태조사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⑧ 기타 증빙서류 1부(전·월세계약서, 무료입차확인서 등) ※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자는 신청 제외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8,365,793원)

○ 특기 분야

구 분	신 청 자 격	추천권자
입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분야: 예술, 체육, 문학, 기능 ○ 신청대상: 초·중·고·대학생 ○ 신청자격: 광역시·도 단위대회 우승자 또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위 이상 입상자라 함은 시상명칭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순위임(최상위 기준 예: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인원 관련 없이 은상이 3위임) ○ 인정기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수상실적 (2019. 8. 26.~2021. 8. 25까지 실적) 	학교장, 학(총)장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기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대회 최고 입상 성적 1개(수상실적 증명 및 상장) 및 대회요강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대회의 성격 및 최고성적 등위가 표기된 대회요강(증빙자료) 반드시 첨부(미 첨부시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달서구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는 신청자기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추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⑤ 품행 및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3. 선발기준

□ 성적우수 분야

구분	선 발 기 준	비 고
대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학기 평균성적: 백분율(환산)점수별 내부기준 (배점표)에 따름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점자순위결정 기준: 1.성적순, 2.소득분위순 	성적 100점 소득8분위내

희망(저소득주민자녀) 분야

구분	선 발 기 준	비 고
고등학생	○ 과목별 이수단위의 가중치를 적용한 성적 순 ※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 1.성적순, 2.소득·재산 적은자 순	2021년 1학기 성적
대 학 생	○ 평균성적 백분율(환산)점수 우수자 순 ※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 1.성적순, 2.소득·재산 적은자 순	2021년 1학기 성적

특기 분야

구분	선 발 기 준	비 고
초·중·고 ·대학생	○ 상위대회(국제대회>전국대회>광역시·도단위대회) 입상자 우선으로 하며, <u>주최 대상에 따라 공공기관> 해당단체> 기타 순으로 함</u> ※ 동점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수상실적

4.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1. 9. 10. ~ 9. 24.(18:00까지)

※ 방문접수: 대리인 가능, 평일 09:00~12:00, 13: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성적우수 및 특기 분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재단사무국(달서구청 별관6층 평생교육과)

○ 희망(저소득주민자녀)분야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5. 문의처: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사무국(☎ 053-667-3232) 및 동행정복지센터

6. 선발결과 통지 및 장학금 지급

선발결과 통지: 2021. 10. 29.(소속학교 및 신청자 개별통지)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전달: 2021. 11. 11.(예정)

○ 장 학 금: 본인 통장 계좌송금

○ 장학증서: 직접 전달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별표 2]

장 학 증 서

학 교 명:

성 명:

위 학생은 지역주민의 정성과 사랑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하니 학업에 전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급액: 금

원

2021. 11. .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 여부 판단,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이증지원 판단 및 확인, 이증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수집·이용· 제공·조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속학교,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구소득, 학업성적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조회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실태조사서 작성 및 소득·재산 입증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 실태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족 상황 :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학생 기준으로) 미혼은 부모 및 형제·자매, 기혼인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기재
※ 학생이 미혼인 경우 가구원 범위: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 포함. 성년 형제자매의 경우 담당자와 상담후 포함여부 결정
2. 월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가구원 「월 소득」란 기재시 근로소득 외에 국가나 기타 기관의 지원금액이 있으면 기재하고 「기타」란에 상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월 소득 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입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 입증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소득·재산자료는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관련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파악하는 것으로서 소득·재산 금액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신청일 현재의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내에 소득과 재산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서에 기재하고 별도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2021년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자의 퇴직증명서, 2021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명세서, 퇴직금 수령증 등 제출
☞ 예> 2021년 중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에 부채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전월세를 준 경우)전월세계약서
3.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재산액을 반영합니다.
4.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의 서식에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년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해 온 경우에는 직전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상이(相異)한 경우,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을 반영합니다.
☞ 소득 예> 신청인이 가구의 근로소득을 연간 3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소득이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가구원 중 퇴사 등 급여 감소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천만원으로 인정
☞ 재산 예> 신청인이 신고한 재산이 3억,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확인된 재산이 5억인 경우, 별도로 금융권 대출확인서, 전세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억으로 인정

위 내용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